

【법 률】

○법률제14874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4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8285호(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

○대통령령제2828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828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8288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

【부 령 령】

○통일부령제9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

○보건복지부령제51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

○보건복지부령제51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60호(귀화허가증정정) 15

○환경부고시제2017-169호(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81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 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82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98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0호(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22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0호(국적상실)..... 23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7-12호(국적상실)..... 2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2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 승인)..... 2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2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2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2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7

(이면 계속)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0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2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3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3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3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0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3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3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2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3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3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3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3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1호(도로구역 결정<변경>)	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2호(접도구역 지정).....	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3호(지형도면)	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7호(하천점용 허가).....	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4호(하천점용 허가).....	6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35호(김해공항 서편활주로 및 S유도로 부분 재포장공사)	6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항로표지 폐지)	6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1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6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2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67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9호(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67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9호(우체국 이전)	68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78호(공시송달).....	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7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8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9호(한국산업표준 폐지).....	7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5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7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51호(한국산업표준 제정).....	72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8호(전자금융업 등록).....	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1호(금융투자업 인가).....	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3호(금융투자업 인가).....	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4호(금융투자업 폐지신청 승인)	7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5호(금융투자업 등록).....	7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6호(금융투자업 업무폐지).....	74

○교육부공고제2017-229호(초·중등교육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78호(470~698MHz 대역 주파수채배치 2차)	75
○국방부공고제2017-209호(공시송달)	77
○국방부공고제2017-210호(공시송달)	78
○국방부공고제2017-211호(공시송달)	78
○국방부공고제2017-212호(공시송달)	79
○국방부공고제2017-213호(공시송달)	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8호(신기술 지정 신청)	8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9호(신기술 지정 신청)	8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0호(신기술 지정 신청)	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41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8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56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산림청공고제2017-248호(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84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96호(목재·목조건축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8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1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8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0호(항만공사 실시계획)	86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29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및 재설치)	87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2호(공시송달)	8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9호(공시송달)	8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0호(공시송달)	88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2호(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8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3호(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9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4호(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시서 공시송달)	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6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108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41호(중앙당 등록)	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42호(중앙당 등록)	109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209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09
○경주시공고제2017-1697호(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110

【상 훈】

○서훈(법무부)	111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112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113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113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113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11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성신양회(주)(김상규) ② (주)포스코건설(한찬건) ③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좌용호)

나. 전화번호 : ① 044-275-7387 ② 032-748-1845 ③ 031-400-5181

2. 명칭 : 자기발열 시멘트계 분체 혼입 조강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시공 기술(약칭 : SHC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제조 타설

<기술의 요지>

일평균 4℃ 이하에서 자기발열성분을 갖는 슬래그와 조기강도 발현성을 갖는 시멘트계 미립분 분말을 혼입한 혼화재료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한중콘크리트 전용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조함으로써, 저온환경에서도 조기에 거푸집 탈형 강도를 발현 및 한중콘크리트 양생의 문제점인 갈탄이나 열풍기에 의한 인명 안전사고 발생, 양생기간의 증가, 에너지 과다 사용 및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재료적 해결하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기술이다. (SHC공법 : Self Heating Concrete 공법)

<범위>

자기발열성분을 갖는 슬래그와 조기강도 발현성을 갖는 시멘트계 미립분 분말을 혼화재료로 사용한 한중콘크리트 전용 조강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활용하여 일평균 4℃ 이하에서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북마건설(이민섭)

나. 전화번호 : ① 02-571-2044

2. 명칭 : 에어커튼 분사노즐을 추가 설치하여 개량체의 강도를 강화하는 지반개량 장치 및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고압분사 시공 중 절삭된 슬라임(토립자)이 지표로 배출하지 못하고 일부가 지중의 하부로 떨어져 주입체와 섞여 개량체의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부 물노즐, 에어노즐과 하부 주입노즐 사이에 1단, 2단의 에어커튼 노즐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상부층에서 배출되지 못한 슬라임을 지표로 배출시켜 시멘트페이스트와 섞이는 것을 차단하고 하부에 떨어지는 슬라임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치환공법임. 이를 통해 지반의 강도를 크게 증진시키고 원주형의 균질한 개량체를 조성하는 한편, 폐기물처리비용이 감소하는 친환경, 경제적인 시공법임

<범위>

개량체의 강도 증진을 위해 에어커튼 노즐을 추가로 설치하여 원주방향 전체에 걸쳐 에어커팅층을 형성함으로써 절삭구간과 치환구간이 구분되어 토사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과 모르타르 주입시 하부에 초정밀 진동기를 설치하여 다짐을 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4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